

KBA 3x3 KOREA TOUR 2024시즌 브랜딩 및 이벤트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

1. 과업명

KBA 3x3 KOREA TOUR 2024시즌 브랜딩 및 이벤트 대행

2. 목적

- 가. 대한민국농구협회 주최 3x3 농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국내 3x3 농구 활성화
- 나. 3x3농구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대회 개최
- 다. 대한민국농구협회의 정기적인 주최로 경기력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

3. 사업개요

- 가. 사업기간 : KBA 3x3 KOREA TOUR 2024시즌 대회 기간
(2024년 4월 ~ 10월)

구분	회차	개최지역	대회일정(안)
지역예선	1차	서울특별시	2024년 4월 13일 ~ 14일
	2차	강원 인제군	2024년 5월 11일 ~ 12일
	3차	세종특별자치시	2024년 7월 6일 ~ 7일
	4차	충북 청주시	2024년 9월 7일 ~ 8일
	5차	전북 전주시	2024년 10월 19일 ~ 20일

※ 개최 일시와 장소는 예정(안)이며, 코로나19 또는 기상 상황 및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나. 세부과업내용

- 각 코트 브랜딩(A보드, 백드롭, 텐트가림막, 대회현수막, 경기일정표 등)
- 각 코트 전광판 및 음향시스템 설치
- 대회용품(의자, 테이블, 텐트, 집기류 등) 관리
- 각 차시 당 행사 운영 매뉴얼 제작
- 전반적인 행사 이벤트 대행 업무(장내아나운서 섭외, 이벤트 진행 등)



4. 사업예산 : 87,600,000원
(임차료 및 부가세 포함)

5. 과업준수사항

- 가. 과업 수행 시,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여건 변동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과업의 추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.
- 나.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자 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 하여 시행한다.
- 다.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계약업체는 대한민국농구협회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.
- 라. 계약업체는 행사에 투입되는 진행요원 등에게 상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
- 마. 계약업체는 과업과 관련된 법규에 의거 필요한 사업자 등록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바. 결과제출
 - 결과보고서 1부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의거한 기타 요청 자료 일체
 -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: 각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

※ 과업 수행 지침

1. 인력 구성 및 운영

- 가. 과업수행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,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수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.
- 나. 과업수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 계획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, 교체 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 할 수 있다.
- 다. 투입인력 및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 사항을 처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.

2. 과업조건

- 가.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, 계약목적물을 과업기간(계약기간) 내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.(계약목적물의 소유권과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·이용권은 발주기관에 양도)
- 나. 발주기관에서 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특서, 상표 등록 등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다.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·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계약금의 30/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.
- 라.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있어 상호 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에 따라 해결하되, 그럼에도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,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.
- 마.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.
- 바. 과업수행자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와 과업 수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.
- 사. 과업수행자의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과업기간 내 장비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

경, 폐기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.

- 아. 발주기관은 목적물의 최종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.

3. 과업의 변경

- 가. 발주기관의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되, 그럼에도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,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.
- 나. 과업수행자의 커책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가능하며,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다. 다음과 같은 경우 양측 간 협의 후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- 본 용역의 목적 상 과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
 -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

4. 계약의 해지

- 가.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7일의 시정기간을 거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
 -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
 -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
 -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
 -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

5.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

- 가. 과업에 의해 산출된 모든 산출물,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나,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유한다. 다만,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다.
- 나.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권리를

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과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을 보유한 자와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- 다.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납품한 계약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사 전·후를 불문하고 민·형사상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감수한다.

6. 과업 보안 사항

- 가.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·시행한다.
- 과업수행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
 - 과업수행 관련 정보(내용, 결과) 등에 대한 보안조치 등
- 나.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7. 과업수행 성과보고

- 가. 과업 추진 중에 생산된 각종 산출물, 보고서 등은 과업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과업수행자는 과업 안내 수행 보고에 따라 정기 보고를 하여 과업 수행 상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- 다. 보고회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과업수행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한다.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라. 본 과업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 또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.

8. 최종보고서 납품

- 가. 최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집 순위, 수록 내용, 성격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.
- 나. 최종보고서는 기한 내 납품하되,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. 승인을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

에는 과업수행자는 재납품해야 하며,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9. 기타사항

- 가.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.
- 나. 본 과업수행지침은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,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.